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58916(본소), 2020다258923(병합), 2020다25893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58916(본소), 2020다258923(병합), 2020다258930(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9667(본소), 2019나209650(병합),
2019나209674(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7231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1. A

원고, 피상고인2. B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 피상고인 11. K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리, 하승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L

판결 선고 2020. 12. 24.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9667(본소), 2019나209650(병합),

2019나20967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반소피고) 2. B"를 "원고 2. B"로 각 경정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통상의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현물분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을 상대로 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의 범위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아무런 증거 없이 요증사실을 임의로 인정하고 그 이유를 생략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원고 2. B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